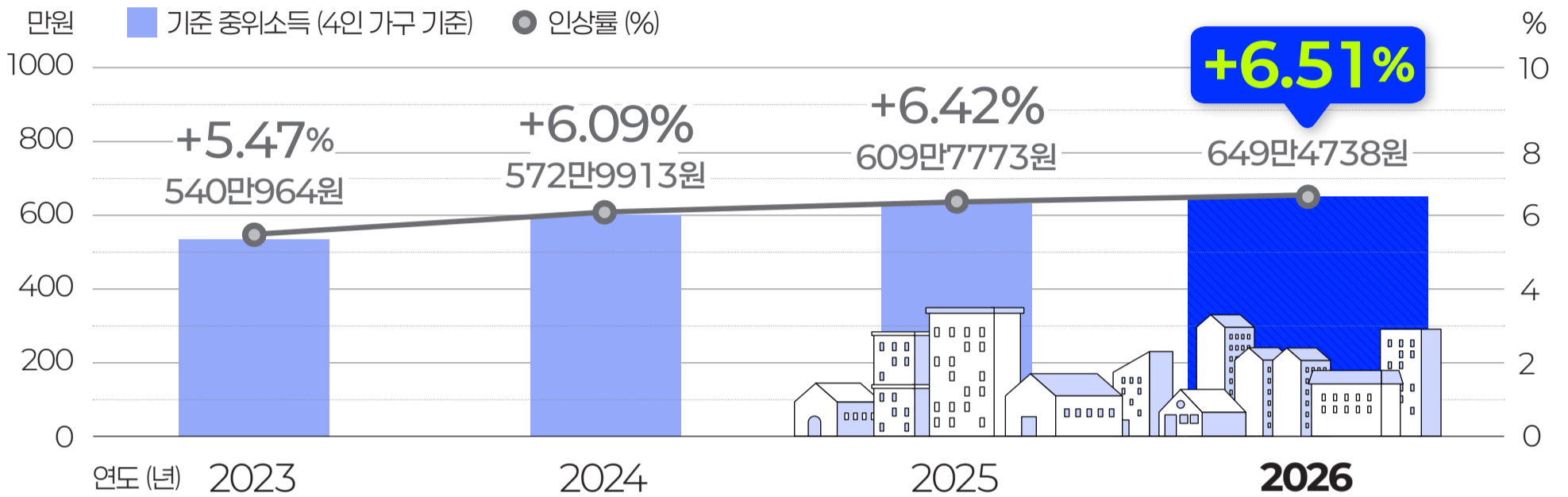


함께 누리는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넓고 두터워집니다



1 기준 중위소득이 6.51%(4인 가구 기준) 인상됩니다.(2026년 적용)

·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롭게 고시되며, 복지급여의 기준도 달라집니다.



※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.20% 인상 * (2025년) 239만2013원 → (2026년) 256만4238원

기준 중위소득이란?

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**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**으로,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.

2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.

-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(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)도 함께 올라갑니다.
- 또한,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**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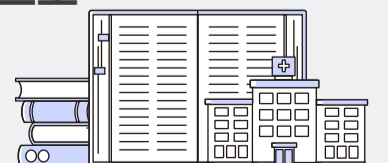
(4인 가구 기준)

*소득인정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



생계급여란?

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※ (1인 가구 기준) (2025년) 76만5444원 → (2026년) 82만556원

③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.

-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**각 급여의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.**

급여

지원 내용 및 금액



의료

(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)

-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지원

<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>

구분		1차 (의원)	2차 (병원·종합병원)	3차 (상급종합병원)	약국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000원	1500원	2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000원	15%	15%	500원



주거

(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)

- [임차급여 기준임대료]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·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

구분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·인천)	3급지 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	4급지 (그 외 지역)
1인 가구	36만9000원	30만원	24만7000원	21만2000원
2인 가구	41만4000원	33만5000원	27만5000원	23만8000원
3인 가구	49만2000원	40만1000원	32만7000원	28만3000원
4인 가구	57만1000원	46만3000원	38만1000원	32만9000원

- [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]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(경·중·대보수)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

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수선비용(주기)	590만원(3년)	1095만원(5년)	1601만원(7년)



교육
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- **교육 활동 지원비(연1회)**
(초) 50만2000원, (중) 69만9000원, (고) 86만원
- **교과서 대금**
(고)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
- **입학금 및 수업료** (고) 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
4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Q&A

Q1. 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**모두 충족**해야 합니다.

- ① 신청 가구의 **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**이어야 합니다.
- ② **부양의무자**가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의 **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**이어야 합니다.

Q2. 소득인정액이란?

가구가 **실제로 버는 소득**과 **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**입니다.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가구별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의 보유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.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^{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2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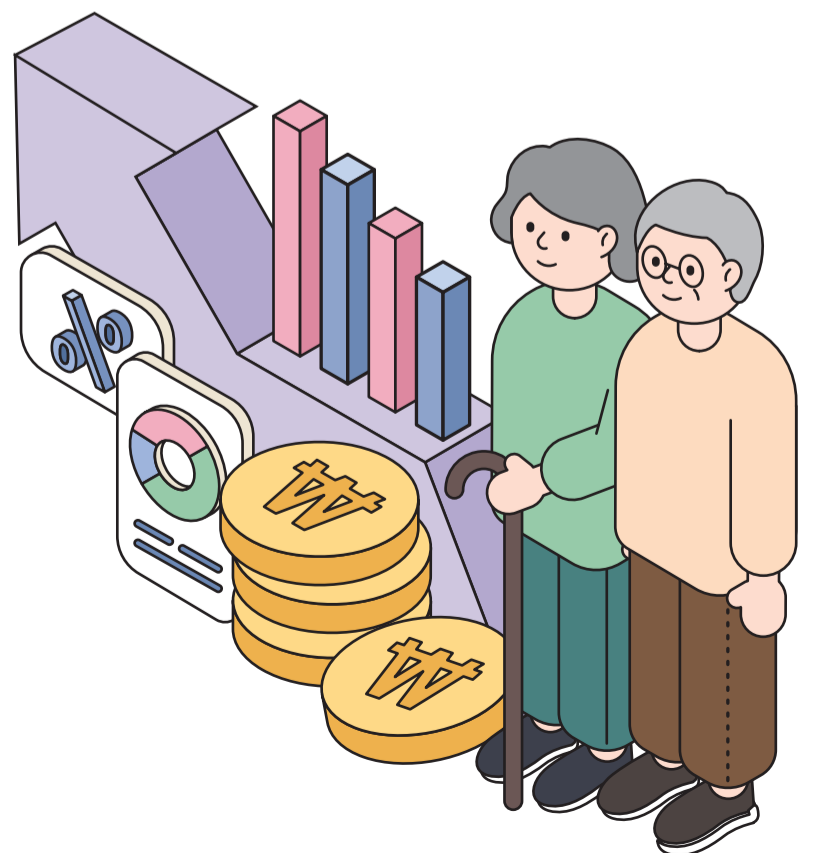
¹⁾ **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 지출 - 근로소득 공제**

- 가구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지출 비용(예: 장애아동수당, 만성질환 의료비 등)
- 근로소득 공제

²⁾ **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* - 부채) x 소득환산율(%)****

* 기본재산액(기초생활에 필요한 재산)

**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 적용(주거용 월 1.04%, 일반재산 월 4.17% 등)



4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Q&A

Q3. 부양의무자란?

수급자의 **부모,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**를 말합니다.

단,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(며느리·사위)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.

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*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* 부양불능(군복무, 해외이주 등), 부양 거부기피(학대, 이혼한 한부모 등), 가족 해체 상태로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Q3-1)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?

아니오. **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**(2021.10.1.)

다만, **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, 재산이 12억원을 초과**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**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Q3-2)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?

네. **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**됩니다.

다만, **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**으로 판단되어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① 소득 기준

- 부양의무자의 **부양능력 판정소득액**[(소득 - 교육비·월세 등 차감항목)]이 (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%) + (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) 이하이어야 합니다.

② 재산 기준

- 부양의무자 **재산의 소득환산액**[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]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인 18% 미만이어야 합니다.

함께 누리는 **총총한**
기초생활보장제도,
더 넓고 두터워집니다

